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8.1.17(수) 17:00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1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월 12일

3. 제안 이유

-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기금을 확대 운영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4. 주요내용

- 가.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대상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(안 제5조)
- 나. 투자진흥기금 조성 방법에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을 추가(안 제13조)
- 다. 투자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 (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 등으로 기부 받은 재산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

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기금을 확대 운영하여 산업 단지 활성화를 통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- 다만, 개정안 제13조제1항제3호가 신설됨으로써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향후 현황 등은 어떠한지 관련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여야 할 것임.